

법제처 심사 전

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2024. 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업기반과)

1. 개정이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85호, 2023. 3. 28. 공포, 2024. 3. 29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계획 승인권자에 “시·도지사” 추가(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)

1)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규정 보완

- 관리·처분계획 승인권자(변경승인 포함)에 “시·도지사” 추가

나.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(안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)

1) 예정지 조사 등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또는 보완

-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(안 제86조제1항제1호)

-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(안 제86조제1항제1호)

- 시행계획 승인 관련 위임규정 보완(안 제86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불임(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대통령령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각각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7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계획 등) ① (생략)	제12조(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·처분계획을 세워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의 관리·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·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</u> 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6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, 경지 정리, 배수 개선, 간척, 매립, 농어촌	제86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

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2.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,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수·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)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3.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·고시 및 변경승인·고시(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) 4. 5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. <삭 제> <삭 제> 3.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